

## 제2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제24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9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순천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2. 입법예고 기간 : 2020. 4. 29. ~ 5. 4.

###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5월 4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gowoon@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유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3208호
----------	--------

발의연월일 : 2020. 4. 29.

발 의 자 : 허유인 의원

## 1. 개정이유

-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에 대해서 참전유공자의 사망시기와 관계없이 평등하게 지급하여 참전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기리기 위함.

## 2.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 지원 제외대상 추가(안 제3조 제3호)
  -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의 사망시기와 관계없이 배우자 수당 지급(부칙 안 제2조)
  - (현행)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만 지급
  - (개정)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포함

## 3. 개정조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호 중 “사람으로로서” 를 “사람으로서” 로 한다.

제3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사람

제4조 제2호 중 “배우자가가” 를 “배우자가” 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 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적용하되,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대상) (생 략)</p> <p>1. (생 략)</p> <p>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u>사람으로로서</u> 보상금을 받는 사람</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제4조(지원사업) (생 략)</p> <p>1. (생 략)</p> <p>2.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u>배우자가</u>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 300,000원 지급</p> <p>3. (생 략)</p>	<p>제3조(지원대상)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 -----<u>사람으로로서</u> -----</p> <p>3. 「<u>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u>」에 따라 <u>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사람</u></p> <p>제4조(지원사업)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u>배우자가</u> ----- -----</p> <p>3. (현행과 같음)</p>
<p style="font-size: small;">[별지 제1호서식]</p>	<p style="font-size: small;">[별지 제1호서식]</p>

# 순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3200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4. 28.

## 1. 제안이유

- 지역진흥 지원을 위하여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었으나, 2019. 12. 31.(화) 한국지역진흥재단 사무가 종료되어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순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

## 3. 폐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3. 17 ~ 2020. 4. 6.)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3. 4.(기획예산실-3408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3. 16.(순천시 공고 제2020-525호)

## 순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순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순천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201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4. 28.

## 1. 제안이유

- 순천의 현재와 미래를 상징하고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공모 실시하여 지역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의 노래 제정
- 새로운 시민의 노래를 통해 순천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고 시민의 화합과 역동하는 새로운 순천의 모멘텀으로 삼고자 함

## 2. 주요내용

- 순천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 개정
  - 순천 시민의 노래 가사와 곡 변경

## 3. 개정안 : 별첨

##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1. 31. ~ 2020. 2. 20.)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4. 16.(여성가족과-831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1. 10(기획예산실-48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1. 31.(순천시 공고 제2020 - 152호)

# 순천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순천시민의 노래

작사, 곡 김인주



1. 새 천 년 새 시 작 — 세 계 로 나 가 는 — 평 화 로 운 이 땅 에 — 자  
2. 희 망 찬 내 일 과 — 꿈 꾸 는 미 래 가 — 마 주 잡 은 두 손 에 — 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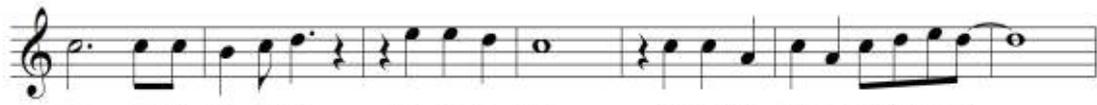
연 이 함 께 하 고 — 갈 대 발 노 을 진 — 풍 경 에 담 겨 진 —  
정 을 가 득 안 고 — 생 명 이 숨 쉬 는 — 정 원 에 담 겨 진 —



하 늘 이 사 랑 한 귀 한 땅 순 천 전 통 과 역 사 가  
하 늘 이 사 랑 한 귀 한 땅 순 천 문 화 와 교 육 이



숨 쉬 는 아 름 다 운 순 천 만 — 물 즐 기 를 타 고 —  
님 치 는 아 름 다 운 봉 화 산 — 산 즐 기 를 타 고 —



우 리 의 꿈 들 을 응 원 한 다 희 망 찬 꿈 과 함 께 간 다 —  
우 리 의 꿈 들 을 응 원 한 다 새 로 운 꿈 과 함 께 간 다 —



랄 랄 라 살 기 좋 은 도 시 — 꿈 이 있 는



도 시 — 함 께 가 는 도 시 아 — 순 천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순천시민의 노래</p> <p>Moderato 맑고 힘차게</p> <p style="text-align: right;">양 동식 작사 박흥기 작곡</p> <p>1. 찬란한 전통문화 유구-한 역사 2. 세 계로 송비하는 우리-의 기상</p> <p>활기찬 거리마다 꽃을 피우네 순천만 앞 바다에 새로 열리네</p> <p>와-늘 뜻 따라사는 평화-의 도시 오곡백과 풍성-한 전원-의 도시</p> <p>꿈과-정신 이 어반은 청백-리 고-을 무-압호 푸른빛 줄 소중-한 유-산</p> <p>(후렴) 활기-찬 온- 우리순천 아름-다운 삼산이수환마 음으로-가꾸어 명-원 허빛 내 자</p>	<p>순천시민의 노래</p> <p style="text-align: right;">작사, 곡 김진주</p> <p>1. 새 천년 새 시작 - 세계로 나가는 평화로운 이땅에-자 2. 희망찬 내일과 - 꿈꾸는 미래가 - 미주담은 두손에-떨</p> <p>면이 활짝 하고 - 값비싼 노동력 - 통역에 맡겨진 정물기 두르고 - 생명이 숨쉬는 - 정물에 담겨진</p> <p>특별히 사랑한 귀한 땅 순천 권 통역역사가 특별히 사랑함 귀한 땅 순천 문 꽃와 교육터</p> <p>숨쉬는 아름다운 순천만 - 물결기름 타고 - 남 지는 아름다운 행복산 - 선물기름 타고 -</p> <p>우리의 꿈을 물 융합한다 희망찬 꿈과 함께간다 - 우리의 꿈을 물 융합한다 새로운 꿈과 함께간다 -</p> <p>활활라 활기 찬 온 도시 - 꿈이 있는 도시 - 함께 가는 도시 허 - 순천</p>

#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205호
----------	--------

- 제출자 : 순천시 장
- 제출일시 : 2020. 4. 28.

## 1. 제안이유

- 상위법에 명시된 정의 등에 관한 사항 삭제
- 관내 개장유골의 봉안당 안치 여건마련
-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표현으로 개선하고 오탈자 띄어쓰기 등 수정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 희생·공헌자의 범위 지정(별표4)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거주기간의 제한 기준 완화

## 2. 주요내용

- 제2조(정의) 개정 : 12개호 삭제 및 5개호 정의 수정
- 제3조의2,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9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의 용어 개정
- 제26조의3(자연장지의 사용)과 제26조의4(자연장지의 사용방법)을 통합하고 용어 개정
- 제16조 제3항의 공원묘지 연장기간을 “5년 이상 30년”을 “15년”으로 변경
- 제17조, 제26조의5, 제28조, 제32조의 사용자의 자격을 “주민등록 1년 이상”을 “주민등록 6개월 이상”으로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의해 국가유공자 사전 주민등록 기간 제한 기준 완화
- 제18조(공원묘지의 면적제한 및 사용료)의 사용료외의 설치비에 대한 단서조항 변경
- 제19조, 제26조의7, 제29조, 제33조(사용료 및 감면)의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범위를 별표로 규정
- 제23조 제1항 제3호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로 삭제
- 제26조의2부터 제47조까지 조명 변경
- 제32조(봉안당 사용자의 자격) 관내 개장유골의 봉안당 안치 여건 마련
- 제34조제2항 봉안당의 연장횟수 “3회”를 “2회”로 변경하여 봉안할 수 있는 총 기간을 “60년”에서 “45년”으로 단축
- [별표2]의 순천시공설묘지 중 삼산공원조성사업으로 인해 용당공설묘지 삭제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의견 3건 접수

○ 의견내용 및 주무과 의견

1. 제27조의3(자연장지 사용자의 자격)제2호 중 라목 신설 조항 삭제  
- (수용) “가” 와 대치됨으로 신설 조항 삭제 타당
2. 제32조(봉안당 사용자의 자격)제2항 “개장유골, 사산아, 다른 시설에 안치된 유골은 봉안이 불가하다” 중 “다른 시설에 안치된 유골은 봉안이 불가하다” 는 존치  
- (수용) 다른 시설 안치유골의 유입 경우 봉안당 수급에 차질
3. [별표 3]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공원묘지 환급률 조정  
- (수용) 최초와 연장으로 구분하여 반환율을 조정함이 타당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6. 5. 31.(여성가족과-3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0. 3. 13(기획예산과-3879)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3. 13(기획예산실-3879)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3. 13.(순천시 공고 제2020-556호)

##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순천시”를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6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조 제14호 및 같은 조 제1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시체”를 “시신”으로,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시”로, 같은 조 제13호 중 “주소지를”을 “지역을”로, 같은 조 제15호 중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시에서 설치한 장사시설과 그 부속시설”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영”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제2항 중 “사용신청”을 “사용”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사용신고”를 “신고”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공설장사시설 사용신고를”을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로 한다.

제9조 중 “경우와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장사시설 신고증명서를 재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을 “경우는”으로, 같은 조 제1호 중 “주소”를 “성명, 연락처 및 주소”로 한다.

제10조제2호를 “공원묘지 및 봉안당 사용 중에 시설의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사용료 반환” 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5호 중 “위반시” 를 “위반 시” 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장부·서류·시설” 을 “장부·서류·시설” 로 한다.

제15조의 제목을 “공원묘지의 명칭 및 위치” 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년 이상 30년 이내로” 를 “15년을” 로, “기간만료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연장 사용신고를” 을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 신청을” 로, “사용자에게 연장 신청” 을 “사용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사용자에게 연장” 으로, “연장 사용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를 “연장된 것으로 본다” 로, 같은 조 제4항 중 “제26조” 를 “법 제28조” 로 한다.

① 공원묘지의 사용(시신을 매장하는 것을 말한다)을 신고하고, 사용구역은 시장이 지정한다.

제17조제1호가목을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두고 있는 사람. 다만,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6개월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로, 같은 호 나목 중 “사망하거나” 를 “사망한 무연고자나” 로,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사망자” 를 “사망자의” 로, 같은 호 나목 중 “순천시” 를 “시” 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다만, 설치비는 1기당 소요되는 매년 초 변경된 잔디구입비, 매년 상하반기 변경된 2명 인건비를 적용한다” 를 “다만, 묘비제작비 등 설치비는 별도로 한다” 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용연장시 사용료는 신청인(연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내 및 관외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역주민” 을 “시민” 으로, “50퍼센트 감면하고 설치비만 징수한다” 를 “50퍼센트 감면한다”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희생·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19조제2항 중 “30%” 를 “30퍼센트” 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제2항” 을 “제1항” 으로, “일정기간 공고 후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를 “법 제28조에 따라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로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6조의2를 제27조로 하고, 제목을 “자연장지의 명칭 및 위치” 로 한다.

제26조의3을 제27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26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6조의3제3항) 중 “안장된” 을 “안치된” 으로, “반환 또는 반출” 을 “반환” 으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26조의3)에 제4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자연장지의 사용(화장한 유골을 잔디 밑에 묻는 것을 말한다)을 신고하고, 사용구역은 시장이 지정한다.
- ④ 시장은 자연장지 위치를 유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⑤ 자연장의 방법과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8조에 따른다.

제26조의4를 삭제한다.

제26조의5를 제27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중전의 제26조의5가목)을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두고 있는 사람. 다만,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6개월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로, 같은 호 나목(종전의 제26조의5제1호나목) 중 “사망하거나 ” 를 “사망한 무연고자나” 로, 같은 조 제2호가목(종전의 제26조의5제2호가목)을 “사망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시에 주소를 둔 경우” 로, 같은 호 라목(종전의 제26조의5제2호라목) 중 “인정하는” 을 “인정한” 으로 한다.

제26조의6을 제27조의4로 한다.

제26조의7을 제27조의5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6조의7제1항) 중 “지역주민” 을 “시민” 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30%” 를 “30퍼센트”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종전의 제26조의7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희생·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3절 제목을 “화장시설” 로 한다.

제27조를 제28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7조제1항) 중 “공설화장장” 을 “공설화장시설” 로, “순천 시립추모공원 화장장” 을 “순천시립추모공원 화장시설” 로,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종전의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화장장” 을 “화장시설” 로 한다.

제28조를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목과 본문 중 “화장장” 을 “화장시설” 로, 같은 조 제1호가목(종전의 제28조제1호가목)을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두고 있는 사람. 다만,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6개월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로, 같은 호 나목(종전의 제28조제1호나목) 중 “사망하거나 ” 를 “사망한 무연고자나” 로, 같은 호 라목(종전의 제28조제1호라목) 중 “사산아” 를 “죽은 태아” 로, 같은 조 제2호다목(종전의 제28조제2호다목) 중 “사망자 직계 존속·비속” 을 “사망자의 직계 존속·비속” 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종전의 제28조제2호마목)을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28조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전라남도내 주소를 둔 부모의 죽은 태아

제29조를 제30조로 하고, 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9조제1항) 중 “화장장” 을 “화장시설”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종전의 제29조 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희생·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30조를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30조제1항) 중 “반환요구시” 를 “반환요구 시” 로,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0조제2항) 중 “수집보관하여 매각하여 세입 조치한다” 를 “수집보관 후 매각하여 시 세외 수입 처리 한다” 로 한다.

제30조의2를 제31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종전의 제30조의2제1항제1호)를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유골의 골분” 으로 한다.

제31조를 제32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31조제1항) 중 “순천 시립추모공원” 을 “순천시립 추모공원” 으로 한다.

제32조를 제33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종전의 제32조제1항제1호가목)을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두고 있는 사람. 다만,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6개월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로, 같은 호 나목(종전의 제32조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른 시설에 안치된 유골은 봉안이 불가하다” 로 한다.

제33조다목(종전의 32조제1호나목)을 “시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나 무연고 변사자” 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32조제1항제1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시에 소재한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유골. 다만, 직계 존속·비속 및 배우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두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3조제2호가목(종전의 제32조제1항제2호가목) 중 “사망자 직계 존속·비속” 을 “사망자의 직계 존속·비속” 으로, “순천시” 를 “시” 로, “1년

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6개월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33조제2항(중전의 제3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3조를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33조제1항) 중 “별표와”를 “별표 1과”로,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3조제2항) 중 “지역주민”을 “시민”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중전의 제33조제2항제1호)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이 경우 희생·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34조제3항(중전의 제33조제3항) 중 “제34조”를 “제35조”로, “납부하여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장사용료는 신청인(연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내 및 관외로 구분하여 적용한다”로 한다.

제34조를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34조제1항) 중 “안치일로부터”를 “안치 날부터”로,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4조제2항) 중 “3회”를 “2회”로, “기간만료일 30일 이내에”를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로, “연장 사용신고를”을 “연장신청을”로, “사용자에게 연장 사용신고”를 “시장은 기간만료일 3개월 전까지 사용자에게 연장 신청”으로, “연장 사용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를 “연장신청이 수리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35조를 제36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35조제1항) 중 “사용연장 신청 및 계속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을”을 “연장사용료를”로,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5조제2항) 중 “유골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공고 후”를 “유골은 일정기간 공고하고,”로 한다.

제36조를 제37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36조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6조제2항)을 본조로 하되, “공설묘지” 앞에 “순천시”를 삽입한다.

제37조부터 제47조까지를 제38조부터 제48조까지로 하고, 제47조(중전의 제46조) 중 “제45조” 를 “제46조” 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의 공원묘지 사용 예매분에 한하여 조례 제16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중전의 규정에 따라 개장유골을 매장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묘지는 조례 제16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중전의 규정에 따라 총 사용기간을 60년까지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사용한 봉안당은 조례 제34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중전의 규정에 따라 총 사용기간을 60년까지 할 수 있다.

[별표 1]

**순천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제6조, 제18조, 제27조의4, 제30조, 제31조의2, 제34조 관련)

(단위 : 원)

종 별	구 분		단 위	사 용 료 관 리 비	비 고
공원묘지	묘지 6.61m <sup>2</sup>	관내	기	1,030,000	* 설치비 별도 * 연장의 경우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1/2적용
		관외	”	1,600,000	
자연장지	묘지 0.25m <sup>2</sup>	관내	”	400,000	
		관외	”	700,000	

(단위 : 원)

종 별	구 분		단 위	사 용 료	비 고
화장시설	15세 이상	관 내	구	58,000	
		관 외	”	405,000	
	15세 미만	관 내	”	45,000	
		관 외	”	202,000	
	개장유골	관 내	”	32,000	
		관 외	”	202,000	
	죽은 태아	관 내	”	26,000	
		관 외	”	135,000	
	유택동산	관 내	”	10,000	
		관 외	”	10,000	
봉 안 당	봉안	관 내	기	180,000	
		관 외	”	600,000	

[별표 2]

**순천시공설묘지 (제37조 관련)**

명 칭	위 치	면적(m <sup>2</sup> )
유 흥 공 설 묘 지	승주읍 유흥리 산175	29,154
도 정 공 설 묘 지	승주읍 도정리 산209	40,228
월 계 공 설 묘 지	승주읍 월계리 산125, 126	23,528
유 평 공 설 묘 지	승주읍 유평리 산119, 119-5, 119-6	33,166
행 정 공 설 묘 지	주암면 행정리 산94, 산95	58,439
대 광 공 설 묘 지	주암면 대광리 산114	8,568
비 룡 공 설 묘 지	주암면 비룡리 산64-6, 64-14, 64-25	1,389
한 곡 공 설 묘 지	주암면 한곡리 산29, 29-1	7,256
백 록 공 설 묘 지	주암면 백록리 산47	9,881
대 구 공 설 묘 지	주암면 대구리 산16	5,091
궁 각 공 설 묘 지	주암면 궁각리 산41	6,664
운 룡 공 설 묘 지	주암면 운룡리 산168	18,549
신 평 공 설 묘 지	송광면 신평리 산88-1, 88-4, 88-6	15,793
대 흥 공 설 묘 지	송광면 대흥리 산134	16,588
화 전 공 설 묘 지	외서면 화전리 산8, 8-1	25,267
수 직 이 탑 골 공 설	외서면 반룡리 산187, 187-1, 187-3	10,309
상 송 공 설 묘 지	낙안면 상송리 산10-1	8,879
하 송 공 설 묘 지	낙안면 하송리 산74-1	19,849
교 촌 공 설 묘 지	낙안면 교촌리 산20	31,103
용 능 공 설 묘 지	낙안면 용능리 산58, 58-2	7,473
창 녕 공 설 묘 지	낙안면 창녕리 산52	28,829
평 사 공 설 묘 지	낙안면 평사리 산7	24,828
석 현 공 설 묘 지	별량면 봉림리 산59	16,137
풍 류 공 설 묘 지	별량면 무풍리 산87	17,653
서 동 공 설 묘 지	별량면 두고리 산6	8,010
화 산 공 설 묘 지	별량면 죽산리 산84	8,225
진 치 공 설 묘 지	별량면 금치리 산267	15,633

명 칭	위 치	면적(m <sup>2</sup> )
대치공설묘지	별량면 금치리 산102	13,468
대동공설묘지	별량면 대룡리 산308	5,855
오곡공설묘지	상사면 오곡리 산35	19,444
응령공설묘지	상사면 응령리 산56	30,217
용계공설묘지	상사면 용계리 산326	13,698
상삼공설묘지	해룡면 남가리 산1	20,641
신성공설묘지	해룡면 선월리 산16-1, 16-3, 신성리 산56	22,509
선학공설묘지	해룡면 선학리 산2	15,051
농주공설묘지	해룡면 농주리 산73	4,546
당천공설묘지	서면 운평리 산224-2, 224-4, 224-5, 224-6, 224-7	52,658
압곡공설묘지	서면 압곡리 산52-1, 152-4, 152-11, 152-12, 152-13, 152-15, 152-16, 152-17	41,859
노은공설묘지	서면 판교리 산227	24,614
하검공설묘지	황전면 죽청리 산12	50,407
죽동공설묘지	황전면 죽내리 산36	27,507
용림1구공설묘지	황전면 선변리 산58	14,453
비촌공설묘지	황전면 비촌리 산15	6,215
회룡공설묘지	황전면 회룡리 산109-1	104,307
송천공설묘지	월등 송천리 53-1	26,821
와룡동공설묘지	와룡동 산102-1	18,942
가곡공설묘지	가곡동 산16-2~5	3,517
남정공설묘지	남정동 산9	16,030
남제동공설묘지	남제동 351-1	492
야흥공설묘지	야흥동 산47-14, 산47-15	35,211
인월공설묘지	인월동 산5-1	10,612
안풍공설묘지	안풍동 산63	7,339

[별표 3]

##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제10조 관련)

종 별	구 분	사 용 기 간	환급율(%)		비 고
			최초	연장	
공원묘지	사용료 관리비	5년 이내	50	50	
		5년 초과 ~ 10년 까지	40	20	
		10년 초과 ~ 15년 까지	30	0	
		15년 초과 ~ 20년 까지	20		
		20년 초과 ~ 25년 까지	10		
		25년 초과	0		
봉 안 당	사용료 관리비	2년 이내	50		※ 연장 사용시 반환 기준 동일
		2년 초과 ~ 4년까지	40		
		4년 초과 ~ 6년까지	30		
		6년 초과 ~ 8년까지	20		
		8년 초과 ~ 10년까지	10		
		10년 초과	0		

[별표 4]

국가보훈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  
(제19조, 제27조의5, 제30조, 제34조 관련)

□ 국가보훈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

법 률 명	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4조	순 국 선 열, 애 국 지 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2조	중·장 기 복 무 제 대 군 인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2조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3조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조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4조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조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순천시에서 설치한 장사시설의 사용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1. “매장“이란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2.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5. (생략)	5. (현행과 같음)
6.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7. “분묘“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삭 제>
8.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삭 제>
9. “화장시설“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삭 제>
10. “봉안시설“이란 봉안묘·봉안당·봉	<삭 제>

현 행	개 정 안
<p><u>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 하는 시설을 말한다.</u></p> <p>11. <u>“봉안당“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을 말한다.</u></p> <p>12. “관내”란 <u>시체인</u> 경우에는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개장인 경우에는 분묘소재지가 <u>순천시(이하 “시”라 한다)</u>인 경우를 말한다.</p> <p>13. “관외”란 관내 이외의 <u>주소지</u>를 말한다.</p> <p>14. <u>“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u></p> <p>15. “공설장사시설“이란 <u>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u></p> <p>16. <u>“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호의 정의에 따른다.</u></p> <p>17. (생략)</p> <p>제3조의2(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u>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u>」(이하 “<u>영“이라 한다</u>) 제3조제3항에 따라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장사시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주변지역 주민에게 해당 장사시설의 부대시설을 우선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p> <p>제5조(사용신고 및 신청)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u>자</u>는 시장에게 신고</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 제&gt;</p> <p>12. ----- <u>시신</u>----- ----- ----- <u>시</u>----- -----.</p> <p>13. ----- <u>지역을</u> -----.</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 제&gt;</p> <p>15. ----- <u>시에서 설치한 장사시설과 그 부속시설</u>----- ----- -----.</p> <p style="text-align: center;">&lt;삭 제&gt;</p> <p>17. (현행과 같음)</p> <p>제3조의2(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① ----- <u>영</u> ----- ----- ----- ----- -----.</p> <p>제5조(사용신고 및 신청) ① ----- ----- <u>사람은</u> -----</p>

현 행	개 정 안
<p>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u>사용신청</u>에 관한 세부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6조(사용료 및 관리비 등) ① (생략)</p> <p>②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등을 <u>사용신고</u>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p> <p>제8조(금지행위) ① (생략)</p> <p>②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특히 <u>공설장사시설 사용신고</u>를 취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안치된 유골의 이전을 명할 수 있다.</p> <p>제9조(사용자의 신고의무 등)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u>경우와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장사시설 신고증명서를 재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u>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p> <p>1. 사용자의 <u>주소</u>가 변경된 경우</p> <p>2. (생략)</p> <p>제10조(사용료등의 반환)</p> <p>1. (생략)</p> <p>2. <u>공원묘지 및 봉안당 사용 중 유골의 인도 요청 : 최초 안치일을 기준으로 별표 3에 따라 반환</u></p>	<p>-----.</p> <p>② ----- <u>사용</u> -----</p> <p>-----.</p> <p>제6조(사용료 및 관리비 등) (현행과 같음)</p> <p>② -----</p> <p>----- <u>신고</u>-----</p> <p>-----.</p> <p>제8조(금지행위)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 <u>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u> -----</p> <p>-----.</p> <p>제9조(사용자의 신고의무 등) -----</p> <p>-----</p> <p>----- <u>경우는</u> -----</p> <p>-----</p> <p>-----.</p> <p>1. ----- <u>성명, 연락처 및 주소</u>-----</p> <p>2. (현행과 같음)</p> <p>제10조(사용료등의 반환)</p> <p>1. (현행과 같음)</p> <p>2. <u>공원묘지 및 봉안당 사용 중에 시설의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사용료 반환</u></p>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공설장사시설의 운영)</p> <p>① ~ ② (생략)</p> <p>③ (생략)</p> <p>1.~ 4. (생략)</p> <p>5. 계약 <u>위반시</u> 조치사항 및 손해배상 조건</p> <p>6. (생략)</p>	<p>제11조(공설장사시설의 운영)</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u>위반 시</u> -----</p> <p>6. (현행과 같음)</p>
<p>제14조(지도감독) ① (생략)</p> <p>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u>장부·서류·시설</u>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제14조(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 <u>장부·서류·시설</u> -----</p> <p>-----.</p>
<p>제15조(<u>명칭 및 위치</u>)</p>	<p>제15조(<u>공원묘지의 명칭 및 위치</u>)</p>
<p>제16조(공원묘지의 사용)</p> <p>① <u>공원묘지의 사용(시체를 매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예매분에 한하여 개장 유골을 매장할 수 있다.)은 사용신고를 이행한 자에 한정하여 가능하며, 사용 묘지구역은 시장이 정하는 장소에 한정한다.</u></p> <p>② (생략)</p> <p>③ 제2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u>5년 이상 30년 이내로</u> 연장할 수 있으며, <u>기간만료일 30일 이내</u>에 시장에게 <u>연장 사용신고를</u> 하여야 하며, <u>사용자에게 연장 신청</u>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연장기간에 따른 제6조의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u>연장 사용</u></p>	<p>제16조(공원묘지의 사용)</p> <p>① <u>공원묘지의 사용(시신을 매장하는 것을 말한다)을 신고하고, 사용구역은 시장이 지정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 <u>15년을</u> -----</p> <p>-----, <u>사용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 신청을</u> -----, <u>사용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사용자에게 연장</u>-----</p> <p>----- <u>연장된</u></p>

현 행	개 정 안
<p><u>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u></p> <p>④ 제3항에 따른 사용기간 연장 사용신고를 하지 않으면 <u>제26조</u>에 따라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p> <p>제17조(공원묘지 사용자의 자격)</p> <p>1. 관내</p> <p>가. <u>사망일 현재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는 사람</u></p> <p>나. 시에서 <u>사망하거나</u> 발견된 무연고 변사자</p> <p>2. 관외</p> <p>가. <u>사망자</u> 직계 존속비속 및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시에 주소를 둔 경우</p> <p>나. 사망자 등록기준지가 <u>순천시</u>인 경우다. ~ 라. (생략)</p> <p>제18조(공원묘지의 면적제한 및 사용료)</p> <p>① (생략)</p> <p>② 묘지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u>(다만, 설치비는 1기당 소요되는 매년 초 변경된 잔디구입비, 매년 상하반기 변경된 2명 인건비를 적용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제19조(공원묘지의 사용료 감면)</p> <p>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p>	<p><u>것으로 본다.</u></p> <p>④ ----- ----- <u>법 제28조에</u> ----- -----.</p> <p>제17조(공원묘지 사용자의 자격)</p> <p>1. 관내</p> <p>가. <u>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두고 있는 사람. 다만,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6개월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u></p> <p>나. --- <u>사망한 무연고자나</u> ----- -----</p> <p>2. 관외</p> <p>가. <u>사망자의</u> ----- -----</p> <p>나. ----- <u>시</u>----- 다. ~ 라. (현행과 같음)</p> <p>제18조(공원묘지의 면적제한 및 사용료)</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다만, 묘비제작비 등 설치비는 별도로 한다)</u></p> <p>③ <u>사용연장시 사용료는 신청인(연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내 및 관외로 구분하여 적용한다.</u></p> <p>제19조(공원묘지의 사용료 감면)</p> <p>① -----</p>

현 행	개 정 안
<p>당하는 관내 <u>지역주민</u>이 사망하여 공원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u>50퍼센트 감면하고 설치비만 징수한다.</u></p> <p>1.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u>&lt;단서 신설&gt;</u></p> <p>2. ~ 4. (생략)</p> <p>②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료를 <u>30%</u> 감면할 수 있다.</p> <p>제21조(사용기간이 경과된 분묘의 처리)</p> <p>① (생략)</p> <p>② 시장은 사용자가 <u>제2항</u>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분묘에 대하여는 <u>일정기간 공고 후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u></p> <p>제24조(사용신고의 취소 등) ① (생략)</p> <p>1. ~ 2.(생략)</p> <p><u>3. 공원묘지 안에서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u></p> <p>4. (생략)</p> <p>② ~ ③ (생략)</p>	<p>----- <u>시민</u> -----</p> <p>----- <u>50</u></p> <p><u>퍼센트 감면한다.</u></p> <p>1. -----</p> <p>----. <u>이 경우 희생·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u></p> <p>2. ~ 4.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 <u>30퍼센트</u> -----.</p> <p>제21조(사용기간이 경과된 분묘의 처리)</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제1항</u>-----</p> <p>-----</p> <p>----- <u>법 제28조에 따라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u></p> <p>제24조(사용신고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lt;삭 제&gt;</u></p> <p>4.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u>제26조의2(명칭 및 위치)</u></p> <p><u>제26조의3(자연장지의 사용) ① 자연장지의 사용(시체 및 개장유골을 화장하여 분골된 유골을 매장하는 것을 말한다)은 사용 신고를 한 자에 한정하며, 사용 묘지역은 시장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u></p> <p>② (생략)</p> <p>③ 자연장지에 <u>안장된</u> 골분은 사용기한에 관계없이 <u>반환 또는 반출</u>할 수 없다.</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u>제26조의4(자연장지의 사용방법) ① 자연장을 하는 사람은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한다.</u></p> <p>② 제1항에 따라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에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p> <p>③ 시장은 분묘 위치를 유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묻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제26조의5(자연장지 사용자의 자격)</u></p>	<p><u>제27조(자연장지의 명칭 및 위치)</u></p> <p><u>제27조의2(자연장지의 사용) ① 자연장지의 사용(화장한 유골을 잔디 밑에 묻는 것을 말한다)을 신고하고, 사용구역은 시장이 지정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안치된</u> ----- ----- <u>반환</u>-----.</p> <p>④ 시장은 자연장지 위치를 유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p> <p>⑤ 자연장지의 설치방법 및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8조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u>&lt;삭 제&gt;</u></p> <p><u>제27조의3(자연장지 사용자의 자격)</u></p>

현 행	개 정 안
<p>1. 관내 가. <u>사망일 현재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는 사람</u></p> <p>나. 시에서 <u>사망하거나</u> 발견된 무연고 변사자</p> <p>다. (생략)</p> <p>2. 관외 가. <u>사망자 직계 존속·비속 및 배우자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는 사람</u></p> <p>나. ~ 다. (생략)</p> <p>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u>인정하는 사람</u></p> <p><u>제26조의6(자연장지의 면적제한 및 사용료)</u></p> <p><u>제26조의7(자연장지의 사용료 감면) ①</u>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 <u>지역주민</u>이 사망하여 자연장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p> <p>1.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lt;단서 신설&gt;</p> <p>2. ~ 4. (생략)</p> <p>②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p>	<p>1. 관내 가. <u>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두고 있는 사람. 다만,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6개월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u></p> <p>나. --- <u>사망한 무연고자나</u> ----- -----</p> <p>다. (현행과 같음)</p> <p>2. 관외 가. <u>사망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시에 주소를 둔 경우</u></p> <p>나. ~ 다. (현행과 같음)</p> <p>라. ----- <u>인정한</u> -----</p> <p><u>제27조의4(자연장지의 면적제한 및 사용료)</u></p> <p><u>제27조의5(자연장지의 사용료 감면) ①</u> --- ----- ----- <u>시민</u> ----- ----- -----.</p> <p>1. ----- ----- <u>이 경우 희생·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u></p> <p>2.~4. (현행과 같음)</p> <p>② ----- ----- -----</p>

현 행	개 정 안
<p>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료를 <u>30%</u> 감면할 수 있다</p> <p>제3절 <u>화장장</u></p> <p>제27조(명칭 및 위치)</p> <p>① 순천시 <u>공설화장장</u>의 명칭은 <u>순천 시립추모공원 화장장</u>(이하 “<u>화장장</u>“이라 한다)이라 한다.</p> <p>② <u>화장장</u>의 위치는 순천시 양율길 132 (야흥동)에 위치한다.</p> <p>제28조(<u>화장장</u> 사용자의 자격) <u>화장장</u>의 사용자격은 다음과 같다.</p> <p>1. 관내</p> <p>가. <u>사망일 현재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는 사람</u></p> <p>나. 시에서 <u>사망하거나</u> 발견된 무연고 변사자</p> <p>다. (생략)</p> <p>라. 시에 주소를 둔 부모의 <u>사산아</u></p> <p>2. 관외</p> <p>가. ~ 나. (생략)</p> <p>다. <u>사망자 직계 존속·비속</u> 및 배우자가 순천시에 주민등록상 시에 주소를 둔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마. (생략)</p>	<p>----- -----<u>30퍼센트</u>-----.</p> <p>제3절 <u>화장시설</u></p> <p>제28조(명칭 및 위치)</p> <p>① ----- <u>공설화장시설</u>----- <u>순천시립추모공원 화장시설</u>(--- “<u>화장시설</u>“-----)-----.</p> <p>② <u>화장시설</u>----- -----.</p> <p>제29조(<u>화장시설</u> 사용자의 자격) <u>화장시설</u>----- -----.</p> <p>1. ----</p> <p>가. <u>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두고 있는 사람. 다만,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6개월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u></p> <p>나. -----<u>사망한 무연고자나</u>----- -----</p> <p>다. (현행과 같음)</p> <p>라. ----- <u>죽은 태아</u></p> <p>2. ----</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다. <u>사망자의 직계 존속·비속</u> ----- ----- -----</p> <p>마. <u>전라남도 내 주소를 둔 부모의 죽은 태아</u></p> <p>바. (현행 마목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b>제29조(화장장 사용료 및 면제 등) ① 화장장</b>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p> <p>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한다.</p> <p>1.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u>&lt;단서 신설&gt;</u></p> <p>2. ~ 4. (생략)</p> <p>③ (생략)</p>	<p><b>제30조(화장시설 사용료 및 면제 등) ① 화장시설</b> -----.</p> <p>② -----.</p> <p>1. ----- ----- 이 경우 희생·공헌자의 범위는 <b>별표 4와 같다.</b></p> <p>2. ~ 4.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b>제30조(화장 잔류물 처리) ①</b> 시장은 화장 잔류물 발생에 따른 투명하고 합리적인 처리방안 마련을 위해 화장 후 유골수습 과정에서 발견된 치금혼합물, 인체보철물 등을 유족 <u>반환요구시</u> 유족에게 인계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유족이 반환을 원치 않는 경우와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량을 <u>수집 보관하여 매각하여 세입 조치한다.</u></p> <p>③ (생략)</p>	<p><b>제31조(화장 잔류물 처리) ①</b> -----</p> <p>-----</p> <p>-----</p> <p>----- <u>반환요구 시</u> -----.</p> <p>② -----</p> <p>----- <u>수집 보관 후 매각하여 시 세외 수입 처리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b>제30조의2(유택동산 사용자의 자격 및 사용료)</b></p> <p>① (생략)</p> <p>1. <u>순천시립 추모공원에서 화장한 유골을 유족이 산골할 것을 희망할 경우</u></p> <p>2. (생략)</p> <p>② (생략)</p>	<p><b>제31조의2(유택동산 사용자의 자격 및 사용료)</b></p> <p>① (현행과 같음)</p> <p>1. <u>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유골의 골분</u></p> <p>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b>제31조(명칭 및 위치) ①</b> 순천시 공설봉안</p>	<p><b>제32조(명칭 및 위치) ①</b> -----</p>

현 행	개 정 안
<p>당의 명칭은 <u>순천 시립추모공원</u> 봉안당 (이하 “봉안당“이라 한다)이라 한다.</p> <p><b>제32조</b>(봉안당 사용자의 자격) ① 봉안당의 사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관내</p> <p>가. <u>사망일 현재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는 사람.</u></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나. <u>시에서 사망하거나 발견된 무연고 변사자</u></p> <p>2. 관외</p> <p>가. <u>사망자 직계 존속·비속 및 배우자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는 사람. &lt;단서 신설&gt;</u></p> <p>나~다. (생략)</p> <p>② <u>개장유골, 사산아, 다른 시설에 안치된 유골은 봉안이 불가하다.</u></p> <p><b>제33조</b>(봉안당 사용료 및 감면) ① 봉안당 사용료는 <u>별표와</u> 같다.</p> <p>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 <u>지역주민</u>이 사망하여 봉안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p>	<p>----- <u>순천시립 추모공원</u> ----- -----.</p> <p><b>제33조</b>(봉안당 사용자의 자격) ① ----- -----.</p> <p>1. ----</p> <p>가. <u>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두고 있는 사람. 다만,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6개월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u></p> <p>나. <u>시에 소재한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유골. 단, 연고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두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u></p> <p>다. <u>시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나 무연고 변사자</u></p> <p>2. ----</p> <p>가. <u>사망자의 직계 존속·비속 ----- -- 시----- 6개월 이상 -- -----.</u> 다만,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6개월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p> <p>나 ~ 라. (현행과 같음)</p> <p>② <u>다른 시설에 안치된 유골은 봉안이 불가하다.</u></p> <p><b>제34조</b>(봉안당 사용료 및 감면) ① ----- --- <u>별표 1과</u> ----.</p> <p>② ----- ----- <u>시민</u>----- ----- -----.</p>

현 행	개 정 안
<p>1.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lt;단서 신설&gt;</p> <p>2. ~ 4.(생략)</p> <p>③ 제34조에 따른 사용기간을 연장할 때는 사용료를 <u>납부하여야 한다.</u></p> <p><b>제34조(봉안당 사용기간)</b> ① 봉안당의 사용기간은 <u>안치일로부터</u> 15년으로 한다.</p> <p>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회에 15년씩 <u>3회에</u>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u>기간만료일 30일 이내</u>에 시장에게 <u>연장 사용신고</u>를 하여야 하며, <u>사용자에게 연장 사용신고</u>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연장기간에 따른 제6조의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u>연장 사용신고가</u> 수리된 것으로 본다.</p> <p><b>제35조(사용기간이 경과된 봉안 유골 처리)</b></p> <p>① <u>사용연장 신청 및 계속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을</u> 납부하지 않으면 시장은 3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3회에 한정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사용자가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u>유골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공고 후</u> 별도 보관한 후에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p>	<p>1. ----- ----- <u>이 경우 희생·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u></p> <p>2. ~ 4. (현행과 같음)</p> <p>③ <b>제35조</b>----- ----- <u>납부하여야 하며, 연장사용료는 신청인(연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내 및 관외로 구분하여 적용한다.</u></p> <p><b>제35조(봉안당 사용기간)</b> ① ----- ----- <u>안치 날부터</u>-----.</p> <p>② ----- ----- <u>2회</u> ----- -----, <u>사용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4개월 이내</u>에 ----- <u>연장신청을</u> -----, <u>시장은 기간만료일 3개월 전까지 사용자에게 연장 신청</u>----- ----- <u>연장신청이</u> 수리된 것으로 본다.</p> <p><b>제36조(사용기간이 경과된 봉안 유골 처리)</b></p> <p>① <u>연장사용료를</u> ----- ----- -----.</p> <p>② ----- ----- ----- <u>유골은 일정기간 공고하고,</u> ----- -----.</p>

현 행	개 정 안
-----	-------

제36조(명칭 및 위치) ① 순천시 공설묘지의 명칭은 순천시립공설묘지(이하 “공설묘지”라 한다)라 한다.

② <삽입> 공설묘지의 세부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37조 ~ 제45조 (생략)

제46조(청문) 시장은 제45조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7조 (생략)

[별표 1] 순천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제6조, 제18조, 제26조의6, 제29조, 제30조의2, 제33조 관련)

종별	구분		단위	사 용 료 관 리 비	비 고
공원 묘지	묘지	관내	기	1,030,000	
	6.61㎡	관외	”	1,600,000	
자연 장지	묘지	관내	”	400,000	
	0.25㎡	관외	”	700,000	

종별	구 분		단위	사 용 료	비고
<b> 화장장</b>	(생략)				
	(생략)				
	(생략)				
	<u>사산오물</u>				
봉안당	<u>납골</u>				

제37조(명칭 및 위치) <삭제>

<삭제> 순천시 공설묘지의 세부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38조 ~ 제46조 (현행 제37조부터 제45조까지와 같음)

제47조(청문) ----- 제46조-----  
-----  
-----.

제48조 (현행 제47조와 같음)

[별표 1] 순천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제6조, 제18조, 제27조의4, 제30조, 제31조의2, 제34조 관련)

종별	구분		단위	사 용 료 관 리 비	비 고
공원 묘지	묘지	관내	기	1,030,000	* 설치비 별도
	6.61㎡	관외	”	1,600,000	* 연장의 경우는 사용료 및 관리를 1/2적용
자연 장지	묘지	관내	”	400,000	
	0.25㎡	관외	”	700,000	

종별	구 분		단위	사 용 료	비고
<b> 화장 시설</b>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u>죽은 태아</u>				
봉안당	<u>봉안</u>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순천시 공설 묘지  
(제36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면적(m <sup>2</sup> )
생략		
용당공설묘지	용당동 산94-1	14,165
생략		

[별표 2] 순천시 공설 묘지  
(제37조 관련)

명 칭	위 치	면적(m <sup>2</sup> )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현행과 같음		

[별표 3]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장사 시설	구분	사 용 기 간	환급률 (%)	
			최초	연장
공원 묘지	사용료 관리비	5년 이내	50	
		5년 초과~ 10년 까지	40	
		10년 초과~ 15년 까지	30	
		15년 초과~ 20년 까지	20	
		20년 초과~ 25년 까지	10	
		25년 초과	0	
봉안 당	사용료 관리비	(생 략)		
		(생 략)		

[별표 3]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종별	구분	사 용 기 간	환급율(%)		비고
			최초	연장	
공원 묘지	사용료 관리비	5년 이내	50	50	
		5년 초과~ 10년 까지	40	20	
		10년 초과~ 15년 까지	30	0	
		15년 초과~ 20년 까지	20		
		20년 초과~ 25년 까지	10		
		25년 초과	0		
봉안 당	사용료 관리비	(현행과 같음)			※ 연장의 경우도 반환 기준 동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별표 4]            국가보훈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            (제19조, 제27조의5, 제30조, 제3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e0e0e0;">법률명</th> <th style="background-color: #e0e0e0;">적 용 대 상</th> </tr> </thead> <tbody> <tr> <td>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td> <td>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td> </tr> <tr> <td>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4조</td> <td>순국선열, 애국지사</td> </tr> <tr> <td>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2조</td> <td>중·장기복무 제대군인</td> </tr> <tr> <td>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2조</td> <td>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td> </tr> <tr> <td>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3조</td> <td>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td> </tr> <tr> <td>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조</td> <td>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td> </tr> <tr> <td>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4조</td> <td>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td> </tr> <tr> <td>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조</td> <td>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td> </tr> </tbody> </table>	법률명	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4조	순국선열, 애국지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2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2조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3조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조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4조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조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법률명	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4조	순국선열, 애국지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2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2조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3조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조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4조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조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재정수반요인

- 제1조(목적) : 순천시에서 설치한 장사시설의 사용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비용추계의 전제

- 순천시 공설장사시설(공원묘지, 자연장지, 화장시설, 봉안당)의 사용료 및 시설 운영비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총 비용(a-b)	764,902	184,389	232,237	176,061	117,075	55,140
세입(a)	6,677,525	1,254,425	1,355,775	1,355,775	1,355,775	1,355,775
세출(b)	5,912,623	1,070,036	1,123,538	1,179,714	1,238,700	1,300,635

### 3-1. 세입 비용추계(제19조, 제27조의4, 제30조,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총계	6,677,525	1,254,425	1,355,775	1,355,775	1,355,775	1,355,775
공원묘지	994,125	198,825	198,825	198,825	198,825	198,825
자연장지	791,000	135,000	164,000	164,000	164,000	164,000
화장시설	4,052,400	752,600	824,950	824,950	824,950	824,950
봉안당	840,000	168,000	168,000	168,000	168,000	168,000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5,912,623	1,070,036	1,123,538	1,179,714	1,238,700	1,300,635
국 비	1,217	220	231	243	255	268
도 비	370	66	70	74	78	82
시 비	5,911,036	1,069,750	1,123,237	1,179,397	1,238,367	1,300,285

##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대상사업 : 순천시 공설장사시설(공원묘지, 자연장지, 화장시설, 봉안당)

○ 사업기간 : 연중

○ 산출액(2020년)

세출 : 1,070,036천원 / 세입 : 1,254,425천원

○ 산출근거(2020년)

■ 세출 : 화장로 필터교체사업 440,000천원

인건비 39,496천원

공공운영비 393,540천원

공원묘지 잔디구입비 등 12,000천원

시설유지비 185,000천원

■ 세입 : 공원묘지 사용료(관내)  $1,030,000\text{원} \times 50\text{건} = 51,500\text{천원}$

공원묘지 사용료(관외)  $1,600,000\text{원} \times 10\text{건} = 16,000\text{천원}$

공원묘지 사용료(수급자, 유공자)  $515,000\text{원} \times 5\text{건} = 2,575\text{천원}$

공원묘지 사용료(연장)  $515,000\text{원} \times 250\text{건} = 128,750\text{천원}$

자연장지 사용료(관내)  $400,000\text{원} \times 250\text{건} = 100,000\text{천원}$

자연장지 사용료(관외)  $700,000\text{원} \times 50\text{건} = 35,000\text{천원}$

화장시설 사용료(15세이상 관내)  $58,000\text{원} \times 1,300\text{기} = 75,400\text{천원}$

화장시설 사용료(15세이상 관외)  $405,000\text{원} \times 1,500\text{기} = 607,500\text{천원}$

화장시설 사용료(관내 개장유골)  $32,000\text{원} \times 600\text{기} = 19,200\text{천원}$

화장시설 사용료(관외 개장유골)  $202,000\text{원} \times 250\text{기} = 50,500\text{천원}$

봉안당 사용료(관내)  $180,000\text{원} \times 600\text{기} = 108,000\text{천원}$

봉안당 사용료(관외)  $600,000\text{원} \times 100\text{기} = 60,000\text{천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서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시민복지국 사회복지과

과장 김미자(☎ 749-6180)

사회복지팀장 정 미(☎ 749-6220)

# 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206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4. 28.

## 1. 제안이유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3항 삭제로 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필요

## 2. 주요내용

- 제5조 각 호외 부분 중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삭제한다.

## 3. 개정안 : 별첨

## 4. 관련법령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12. 2. ~ 2019.12.23.)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10. 24.(여성가족과-21492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10. 22.(기획예산실-13549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11. 26.(순천시 공고 제2019-2135호)

# 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외 부분 중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대상사업 및 예산지원) 순천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 의 사업에 대하여 <u>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u>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 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 5. (생략)	제5조(지원대상사업 및 예산지원) ----- ----- ----- <u>&lt;삭제&gt;</u> ----- ----- ----- 1. ~ 5. (현행과 같음)

#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202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4. 28.

## 1. 제안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추가 반영 및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19.8.27.) 및 동법 시행령 개정(19.11.26.)
- 도시재생위원회, 주민협의체의 구성·기능 명확화

## 2. 주요내용

- 주민협의체의 설립 요건 중복 규정에 따른 조문 수정(안 제2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 및 공익목적의 주민 공동이용시설 추가 반영(안 제7조 제4호~제6호)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익 목적을 위한 활동,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감면절차 규정(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규정(안 제8조, 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 3)
- 주민협의체의 설립 요건 수정 및 역할 규정(안 제15조)

## 3. 개정안 : 별첨

## 4. 관련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3. 16. ~ 4. 6.)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3. 6.(여성가족과-510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3. 13.(기획예산실-3909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3. 16.(순천시 공고 제2020-557호)

#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민협의체”란 해당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제7조 중 “제3조제5호”를 “제3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창업 공유 공간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커뮤니티·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6.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
2.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마을관리협동조합 등의 활동
3. 지역 홍보 및 축제, 문화 예술 등 관련 활동
4. 주민 소통 및 공동체 활동, 마을 환경개선,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주민지원을 위한 활동
5.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 목적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제15조의 “주민협의체”
3. 법 제2조제1항 제9호의 “마을기업”
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제2조 제2호의 “사회적경제 조직”
5. 그 밖의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제7조의3(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절차 등) 제7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표자의 주소, 성명
3. 사용목적, 사용기간
4. 안전관리계획
5. 해당 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기여 방안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중지 또는 사용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하여 정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주민이 제안한 도시재생사업
3. 도시재생사업 보조 및 융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순천시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④ 위원회 및 자문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회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주민협의체의 설립 및 역할) ①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체 활동을 통한 주민의 자율적 참여 유도 및 지역 공감대 형성
2. 합의 도출을 위한 주민 갈등조정과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3. 도시재생의 주체로서 사업의 발굴, 계획수립에의 참여 및 재생사업의 추진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2. <u>“주민협의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3명 이상의 자발적 주민협의회 조직 등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u></p> <p>제7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p> <p>1. ~ 3.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설&gt;</u></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설&gt;</u></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설&gt;</u></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설&gt;</u></p>	<p>제2조(정의) ----- -----.</p> <p>2. <u>“주민협의체”란 해당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u></p> <p>제7조(공동이용시설) ----- 제3조제6호-----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창업 공유공간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u></p> <p>5. <u>커뮤니티·학습·회의 공간, 공연·전시·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u></p> <p>6. <u>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u></p> <p>제7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① <u>「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u></p> <p>1. <u>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u></p> <p>2. <u>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마을관리협동조합 등의 활동</u></p> <p>3. <u>지역 홍보 및 축제, 문화 예술 등 관련 활동</u></p> <p>4. <u>주민 소통 및 공동체 활동, 마을 환경개선,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주민지원을 위한 활동</u></p> <p>5. <u>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 목적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활동</u></p> <p>② <u>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u>제10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u></p> <p>2. <u>제15조의 “주민협의체”</u></p> <p>3. <u>법 제2조제1항 제9호의 “마을기업”</u></p> <p>4. <u>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u></p>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제8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순천시 도시재생위원회를 둔다.</p> <p>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순천시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③ 영 제10조제3항제2호의 행정기관의 공무원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국장, 과장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 style="text-align: center;"><u>「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제2조 제2호의 “사회적경제 조직”</u></p> <p>5. 그 밖의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p> <p>제7조의3(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절차 등) 제7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물건의 표시</li> <li>2. 대표자의 주소, 성명</li> <li>3. 사용목적, 사용기간</li> <li>4. 안전관리계획</li> <li>5. 해당 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기여 방안</li> <li>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li> </ol> <p>②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중지 또는 사용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하여 정할 수 있다.</p> <p>제8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li> <li>2. 주민이 제안한 도시재생사업</li> <li>3. 도시재생사업 보조 및 용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li> <li>4.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순천시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③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p> <p>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p> <p>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p>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제15조(주민협의체의 설립)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주민 3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p>	<p><u>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u></p> <p><u>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u></p> <p>제8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u></li> <li><u>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u></li> <li><u>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u></li> <li><u>4. 위원회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u></li> <li><u>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u></li> <li><u>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u></li> </ol> <p>제15조(주민협의체의 설립 및 역할) ①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p> <p><u>② 주민협의체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공동체 활동을 통한 주민의 자율적 참여 유도 및 지역 공감대 형성</u></li> <li><u>2. 합의 도출을 위한 주민 갈등조정과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u></li> <li><u>3. 도시재생의 주체로서 사업의 발굴, 계획수립에의 참여 및 재생사업의 추진</u></li> </ol>

# 순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3203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4. 28.

## 1. 제정이유

-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 및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등 문체부 2차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 등(안 제1~4조)
-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등(안 제5조)
-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등(안 제6~15조)
- 문화도시센터 설치 등(안 제16~19조)

## 3. 제 정 안 : 별첨

## 4. 관련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3. 31. ~ 2020. 4. 20.)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4. 1.(여성가족과-7143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3. 27.(기획예산실-4492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3. 31.(순천시 공고 제2020-678호)

# 순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순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순천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문화도시”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문화도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이 성별·연령·종교·장애 등으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7. 지역문화 환경 및 자원 현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견수렴)**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 전문가 및 문화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민간과 문화도시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순천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추진위원회 기능)** 추진위원회는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결정사항

**제9조(추진위원회 구성 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사업을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문화예술, 생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시계획 및 경관, 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문가
4. 관련분야 대학교수
5.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안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장소·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추진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장기 불참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추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4. 제14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추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용역·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천시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센터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④ 센터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문화도시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홍보·운영 및 센터 인력관리 등
2.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
3. 문화도시 조성사업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구축·운영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운영 사항

제1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수탁자에 대하여 서류와 장부에 대한 검사와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 수탁자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204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4. 28.

## 1. 제안이유

- “순천시관광진흥 협의회”는 자문을 위한 위원회 성격으로 명칭을 “순천시 관광진흥 위원회”로 개정하고, 관광사업 육성뿐만 아니라 관광진흥 시책 추진 등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자문 기능으로 변경코자 하며,
-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급조건 완화 및 단가상향으로 관광객 적극 유치를 통한 지역관광활성화 유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순천시관광진흥 협의회” 명칭을 “순천시관광진흥 위원회”로 변경 (안 제3장,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 “순천시관광진흥 위원회” 설치 목적 개정(안 제5조)
  - 관광사업을 육성하고 관광 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문
- “순천시관광진흥 위원회” 기능 신설(안 제6조)
  - 관광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
- 단체관광객 보상금 지급기준, 지급단가, 지급대상 개정(안 제14조제3항 별표1)
  - 지급금액 상향 조정 및 숙박 일수에 따른 차등 지급 (1박 8,000원 → 10,000원, 2박 이상 → 15,000원)
  - 관광객 적극적 유치를 위한 성수기(3~6월, 9~11월), 비수기(7~8월, 12~2월) 구분
  - 수학여행단 유치 증가를 위하여 지급 단가 상향 조정(3,000원 → 4,000원)

##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제47조의7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3. 16. ~ 4. 5.) 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3. 13.(여성가족과-5709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3. 13.(기획예산실-3878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3. 16.(순천시 공고 제2020-548호)

#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을 “관광진흥 위원회” 로 한다.

제5조 전단 중 “관광사업 육성에 관한” 을 “관광사업을 육성하고 관광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으로, “순천시관광진흥 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 를 “순천시관광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로 한다.

제6조 중 각 호외의 부분 중 “협의회” 를 “위원회” 로, “협의한다” 를 “자문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광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13조 중 “협의회” 를 각각 “위원회” 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상금 지급기준, 지급단가, 지급대상(제14조제3항 관련)**

구 분	지급기준	지급단가		지급대상
		성수기 (3~6월, 9~11월)	비수기 (7~8월, 12~2월)	
내·외국인	내국인 15명 이상	1박 10,000원	1박 12,000원	관광 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여행사)
	외국인 5명 이상	2박 이상 15,000원	2박 이상 20,000원	
수학여행 및 학생단체	20명 이상	1박 4,000원		※ 숙박료와 체험료가 중복시 하나만 지원
		2박 이상 6,000원		
농촌체험	체험 참여자	체험경비의 50% 범위내		
	내국인 10명 이상	1박 10,000원	1박 12,000원	
	외국인 5명 이상	2박 이상 15,000원	2박 이상 20,000원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장 <u>관광진흥 협의회</u></p> <p>제5조(설치)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 등 <u>관광사업 육성에 관한</u>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u>순천시관광진흥 협의회</u>(이하 “<u>협의회</u>”라 한다)를 둔다.</p> <p>제6조(기능) <u>협의회</u>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협약한다</u>.</p> <p>1. ~ 3.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설&gt;</u></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설&gt;</u></p> <p>4. (생략)</p> <p>제7조(구성) ① <u>협의회</u>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u>협의회</u>의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당연직 위원은 <u>협의회</u>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1. ~ 3. (생략)</p> <p>④ <u>협의회</u>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진흥업무 담당과장이 된다.</p>	<p>제3장 <u>관광진흥 위원회</u></p> <p>제5조(설치) ----- ----- <u>관광사업</u> <u>을 육성하고 관광 진흥 시책을 효율적</u> <u>으로 추진하기 위한</u> ----- ----- <u>순천시관광진흥 위원회</u> <u>(이하 “위원회”라 한다)</u> -----.</p> <p>제6조(기능) <u>위원회</u>----- -- <u>자문한다</u>.</p> <p>1. ~ 3. (현행과 같음)</p> <p><u>4. 관광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u> <u>관한 사항</u></p> <p><u>5.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콘텐츠 발굴</u> <u>에 관한 사항</u></p> <p>6. (현행 제4호와 같음)</p> <p>제7조(구성) ① <u>위원회</u>----- ----- --.</p> <p>② <u>위원회</u>----- -----.</p> <p>③ ----- <u>위원회</u>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④ <u>위원회</u>----- ----- -----.</p>

제8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생략)

제11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

보상금 지급기준, 지급단가, 지급대상(제14조제3항 관련)

구분	지급기준	지급단가	지급대상	비고
외국인	1회 5명 이상	숙박시 1명 12,000원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수학여행 및 학생단체	1회 20명 이상	숙박시 1명 3,000원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초,중,고 대학생
농촌체험 (숙박)	체험참여자	체험경비의 50%범위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숙박비와 체험료가 중복시 하나만 지원
	내국인 1회 10명 이상	숙박시 1명 8,000원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외국인 1회 5명 이상	숙박시 1명 12,000원	관광사업자	

제8조(위원장의 직무)

- ① -----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

- ② **위원회** -----

제12조(운영세칙) ----- **위원회** ----- **위원회** -----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

[별표 1]

보상금 지급기준, 지급단가, 지급대상(제14조제3항 관련)

구분	지급기준 (1회 방문)	지급단가		지급대상
		정수기 (3~6월, 9~11월)	비수기 (7~8월, 12~2월)	
내·외국인	내국인 15명 이상	1박 10,000원	1박 12,000원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 (여행사)
	외국인 5명 이상	2박 이상 15,000원	2박 이상 20,000원	
수학여행 및 학생단체	20명 이상	1박 4,000원		* 숙박비와 체험료가 중복시 하나만 지원
		2박 이상 6,000원		
농촌체험	체험참여자	체험경비의 50%범위내		* 숙박비와 체험료가 중복시 하나만 지원
	내국인 10명 이상	1박 10,000원	1박 12,000원	
	외국인 5명 이상	2박 이상 15,000원	2박 이상 20,000원	

#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 관광진흥조례 제14조제1항제1호

- 1항 : 시장은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호 :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시 관내 숙박시설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유치하는 경우

## 2. 비용추계의 전제

### ○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급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총 비용(a-b)	-295,000	-55,000	-60,000	-60,000	-60,000	-60,000
세입(a)	0	0	0	0	0	0
세출(b)	295,000	55,000	60,000	60,000	60,000	60,000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 계	295,000	55,000	60,000	60,000	60,000	60,000
시 비	295,000	55,000	60,000	60,000	60,000	60,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세부산출 내역(세출)

▪ 11,000원\* 5,000명

\* 11,000원 : 1박 성수기·비수기 단가 평균 금액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서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문화관광국	관광과	과장	서숙자(☎749-5500)
		체험관광팀	양은연(☎749-5807)

# 순천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3207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4. 28.

## 1. 제안이유

- 순천시내 간선망을 이루는 가로에 고유 명칭을 부여하여 사용케 함으로써 순천시민의 가로사용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도로명주소법」 및 「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가 시행(2008. 6. 16.)되어 가로명 사용 불필요함

## 2. 주요내용

- 순천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

## 3. 폐지안 : 별첨

##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3. 31. ~ 2020. 4. 21.)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3. 20.(기획예산실-421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3. 31.(순천시 공고 제2020-669호)

## 순천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순천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